

2023 군자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군자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6학년부장, 5학년부장)
-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순	구 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이*안	교 감
2	부위원장	김*규	안전진로교육업무 담당부장
3	위 원	정*이	학교폭력 담당자
4	위 원	최*영	6학년부장
5	위 원	강*성	5학년부장
6	간 사	김*규	안전진로교육업무 담당부장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 부장이 맡는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4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삭제조치~~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5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학교내의 봉사의 예

- | | |
|------------------------------------|---------------|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사들의 업무보조 |
| 3) 교재·교구 정비 |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 5)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반성문, 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 |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사회봉사의 예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 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 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

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㉔ 삭제조치

㉕ 선도처분

선도 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1. 훈계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지도하고 지도가 끝난 후에 관련 서류는 생활지도업무 담당부로 제출한다.
2. 학교 내 봉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가 기획하되 학급 담임과 학년 지도교, 생활지도업무 담당부가 협조 하여 지도한다.
3.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이상은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생활지도업무 담당부가 기간, 결정한다.

제16조(퇴학처분 전 조치) 삭제조치

제17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㉔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8	교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㉔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	
15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6	무단결석(5)일 이상인 학생	○	○	○		
17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참여한 학생		○	○	○	
1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0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1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2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23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5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㉔
26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7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1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재심청구) 삭제조치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21조(사안설명) ① 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선도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 나)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다) 담임·기타 참고 교사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라)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별 개별 질의가 원칙(개별 문답 시 다른 학생과 다른 보호자 참관 불가)
- 마)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바)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및 방법 심의의결
- 사) 징벌적 차원보다 학생의 행위와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아)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교육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됨
 - 교육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개

인정보 등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됨

제23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6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방법 및 내용

<2022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원칙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중에 위촉하여 구성한다.

● 구성

순	구분	성명	비고
1	학생 대표	이00	전교학생자치회회장
		박00	전교학생자치회부회장
		박00	전교학생자치회부회장
2	학부모 대표	김00	학부모회장
		김00	학교운영위원장
3	교원 대표	정00	교무기획부장
		윤00	교육연구부장
4	간사	김00	안전진로부장
5	위원장	이00	교감

② 구성 및 역할

역 할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개정 시안 수립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각종 양식>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1부.
2. 학생 자기변론서 1부.
3. 목격자 확인서 1부.
4.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5.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1부.
6. 학생 선도 대장 1부.
7. 조치 결과 통보서 1부.
8. 이의 신청서 1부.
9. 재심 청구서 1부.
10. 징계(퇴학) 심사 자료 1부.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에 따른 심의자료

1. 제출자료(필수)
 - ① 징계(퇴학) 심사 자료(서식 10 및 증빙자료 일체)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부결재문서
 - ③ 학생 자기 변론서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 ⑤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 ⑥ 조치결과 통보서
2. 임의(선택) 제출자료
 - ① 목격자 확인서 또는 진술서
 - ② 사실 확인서(교사용)
 - ③ 담임의견서
 - ④ 담임교사 상담일지 등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__년__월__일__시경 ② __개월 간 __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_____) 학교 밖 (_____)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__년__월__일	작성 학생	(서명)		

사실 확인서 (교사용)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__년__월__일__시경 ② __개월 간 __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_____) 학교 밖 (_____)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__년__월__일	작성 교사	(서명)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__년 __월 __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학생생활교육대장

군자초등학교

구분	년월일	학번	성명	선도구분	선도규정	선도사유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1	내용									
	지도	00. 00 - 00. 00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특별교육) 0일)								
2	내용									
	지도									
3	내용									
	지도									
4	내용									
	지도									
5	내용									
	지도									
6	내용									
	지도									
7	내용									
	지도									

조치 결과 통보서

결	부장	교감	교장
제			

()학년 ()반 ()번 성명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군자초등학교장

-----절-----취-----선

조치 결과 통보서

()학년 ()반 ()번 성명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군자초등학교장

※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지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주택(휴대전화)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명		소속	()학교 ()학년 ()반		
선도 조치 일자	년	월	일	선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이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이의 신청 청구인) : (인)			
군자초등학교장 귀하							

